

1970

인구센서스평가보고

통계청도서실



B004883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ing a date that appears to be 1970.7.26 and a signature.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70년 10월 1일에 실시한 총인구 및 주택 조사에 대한 평가보고서로서 주로 조사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1970년 센서스를 실시하는과정 또는 사후에 발견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앞으로 실시할 센서스에서 의 참고자료로 편찬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 후일의 센서스 업무에 귀감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4. 7.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장 장 신 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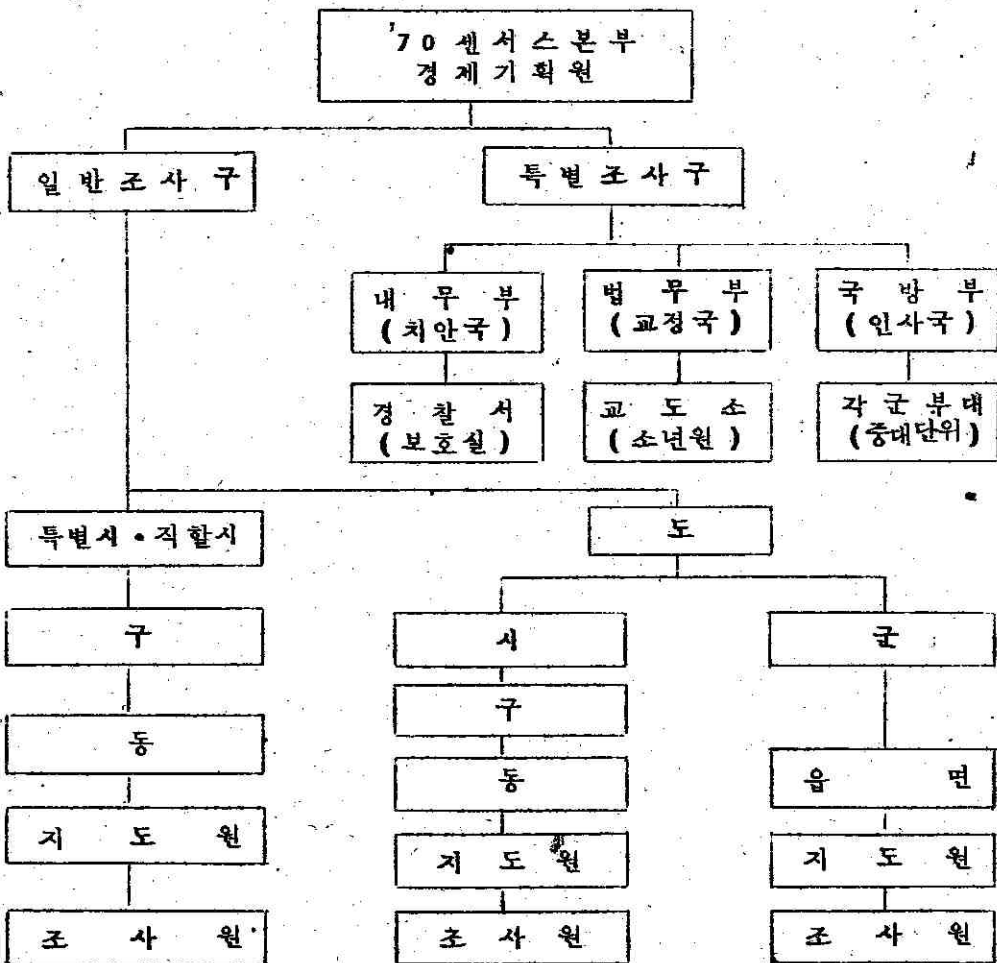
1. 센서스조직	3
2. 소요예산	12
3. 조 사 구	17
4. 선 권	24
5. 훈 련	29
6. 조사대상	35
가. 상주개념	35
나. 1970년 센서스에서 누락과 중복사례	39
7. 포 본	58
8. 사후조사	60
9. 자료처리	76

1. 센서스 조직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기구는 1970년 5월에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본부의 조직과 조사계통 조직으로 나누어진다.

가. 행정조직

이 조직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주관이 되어 각 시·도의 장, 구·시·군의 장 및 동·읍·면장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러한 실시 본부의 기구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센서스가 실시된 이래 처음 설치된 것으로서 상당히 발전적이라 평가되어야 한다.

1) 자 문 관

1960년 국세조사 당시에는 경제부흥 특별회계에 따른 센서스의 상주고문단의 자문을 받았고 그때 당시는 대규모의 고문단이라 할 수 있으며, 1970년 센서스에서는 국내외를 망라한 자문관의 활동이 본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외국자문관중 Dr. H.S Shryock 와 Dr. Eli, S Marks, 등과 Ha waii 大의 조이계 박사 등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에 체재하면서 도움을 주었고, 국내 자문관으로는 학계 및 사계에 권위있는 학자들을 위촉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자문토록 했으며, 이 들중 서울대 의대 학장 권이혁 교수, 고려대 정경대학 김윤환 교수 그리고 서울대 상대 학장 변형운 교수등은 센서스를 위한 유보수 자문관으로 일정기간동안 자문을 했다.

그 외의 8인은 비정기적으로 수차의 회의를 통해 자문을 했었다

문 제 점

1970년 센서스의 조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국내에서 실시한 센서스중 그 규모나 인적 조직이 가장 방대했고 이러한 조직은 앞으로 있을 센서스 시행과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본 그 조직의 활용면은 다소 유명무실했던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1. 행정조직상의 문제

원래 각국의 센서스에서 센서스를 관장하는 총본부는 중앙 통계 부서에서 직접 다루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우리나라에서의 통계행정조직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문제시되는 점은 지방통계 관계자의 자질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각 시·도 지방통계기구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경상통계업무는 사실상 중앙통계 경유(經由) 기관으로서의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 센서스에서 당시의 지방기관인 시·도 및 구·시·군의 지방통계담당기관에서 다루어진 센서스 업무는 조사표류의 배부 및 수집, 훈련의 직접 및 간접적인 참여등 지방기관으로서의 당연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만을 처리할 뿐 자체처리로서 차기관내의 조사표 내용검사, 계수파악, 훈련, 업무의 감독등은 거의 경시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조사표의 내용검토는 중앙에서 일괄해서 질의조회하는 것 보다는 하급기관에서 내용착오를 빨리 발견하여 처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 주도한 것이며 정확히 처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국에서 수집된 조사표는 수집된 직후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내용검사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가구 또는 가구의 전출로 인한 질의 조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센서스 담당공무원이 타지역 또는 다른 업무부서로 전보되는 사례가 많아 조사진행과정에서 차질을 가져 왔다.

개 선 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뿐만 아니라 평소의 각종 통계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지방통계조직을 보조기관 내지 경유기관만으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중점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질이 높은 지방지도원으로 하여금 센서스의 일선업무를 감독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75년 인구 센서스에서는 각지방통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본 조사가 시작되는 75년 1월부터 실시 조사가 완료되는 10월 말까지 우수한 공무원으로 대치 또는 장기훈련을 함으로써 센서스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일단 훈련이 된 각급 지방지도원들의 진출 내지 전보는 가능한 억제시키도록 기관장과의 조가 필요하다.

2) 실시본부조직

조사통계국장을 센서스 실시 본부장으로, 통계심의관, 인구통계 과장파 업무의 성질별로 사무관을 반장으로 한 5개의 반을 편성되었으며, 사계 및 학계에 권위있는 내국인 11명과 외국인 4명으로 센서스의 자문관을 임명하였다.

특히 70년 센서스를 주관하고 있는 인구통계과는 평상시의 경 상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센서스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5개반을 편성 하였다.

- 가) 종합반
- 나) 조사표 설계 및 훈련반
- 다) 조사구 관리반
- 라) 표본 관리반
- 마) 계통 선전반

(각반의 업무내용은 조사본부조직표 참조)

문 제 점

센서스 실시를 위한 본부조직은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완벽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뒷받침으로써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개 선 점

1. 자문관의 적극적인 활용

자문관은 형식적으로만 임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용을 위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이상) 가능한 자문관회의를 자주 열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충동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이용자 회의

폭넓은 이용가치를 집약시키기 위하여 공공 및 각종 사회단체의 이용자 회의를 소집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여 이를 반영토록 한다.

3. 인원 동원 체계

센서스를 주관하고 있는 인구통계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국 각과의 유능한 직원으로 하여금 Task-force 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각과의 과장을 반장으로 한 시·도 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독려토록 충분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4. 본부요원 확보

센서스 실시의 당해년도에 가서야 기구의 확대, 필요인원의 확보등은 비단 1970년 센서스 때만이 아니다.

이러한 거국적인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전에 본부의 기구를 고정시켜 모든 업무 태세를 갖추어야만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 . 예 산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2 차년도에 실시한 1970 년 총 인구 및 주택조사는 당시의 비생산적인 투자부분에의 예산을 억제시켰음에도 본조사의 중요성으로 보아 총 7 억 5 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조사토록 했다.

예산규모 대비 (1960~1970)

(단위 : 천)

	1960	1966	1970
총 예 산	295,726	183,724	752,086
인 구	24,989	29,160	31,435
가 구	4,378	5,184	5,863
가 구 당 소 요 예 산	68 원	35 원	128 원
1 인 당 소 요 예 산	12 원	6 원	24 원

※ 연도별 집행예산 포함

※ 60 년은 환을 원으로 환산했으며 경제부흥특별회계 예산도 포함됨.

위의 예산대비표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1970 년의 센서스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960 년의 예산도 당시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대규모의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외원(外援)에 의한 경제부흥특별회계가 10 억환이

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였다.

적어도 센서스의 예산을 전문적으로 분석 검토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 (1) 인구의 조밀성 여부
- (2) 교통, 통신의 발달 여부
- (3) 조사 기술의 수준
- (4) 민도와 국민의 협조성
- (5) 설계한 조사표의 내용
- (6)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연도별 집행액

(단위 : 천원)

		1970	1971	1972	1973	총 계
	총 액	514,326	162,007	75,753		752,086
1	잡 금	5,922	34,830	9,807	4,811	55,370
2	여 비	13,561	1,734	840	1,035	17,170
3	공 공 요 금	644	163	145		952
4	수 용 비	67,492	9,930	17,999	20,172	115,593
5	수수료 및 수선료	6,304	495	600	2,640	10,039
6	비 품 비	830	2,625	200		3,655
7	특별 판 공 비	4,631	1,302	200	480	6,613
8	임 차 료	200	71,303	38,018		109,521
9	제 세		1,172	423		1,595
10	시 설 비		7,098			7,098
11	재 료 비 기 타	19,524	29,473	7,521		56,518
12	도 서 구 입 비			52		52
13	지 방 보 조 금	395,220	1,830,000			397,050

1970년 센서스 예산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면 센서스 실시 당해 연도인 1970년이 514천만원으로 가장 경비가 많이 들었으며 전체예산의 68%가 소요 되었다.

이러한 예산중 조사원 수당으로 지급된 경비는 35천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78천여명의 조사원 수당의 지급내용을 보면 표본조사구 4,500원 전수조사구 3,700원으로 평균 4,100원이 지급되었다.

조 사 원 수 당 비 교

	1960	1966	1970
수 당	4,000 환	1,050 원	4,100 원

문제점 및 개선점

1970년 소요경비의 집행내용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당해 년도에 68%를 집행한 것은 조사원 수당으로 말미암은 상대적인 집행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준비기간인 1968년 및 1969년도에는 거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센서스 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당해 년도에 집행함은 센서스운영상 어쩔수 없는 결과이나 사전에 계획되어야 할 문제점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기가 곤란할 점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조사구 설정, 조사표 설계, 시험조사, 결과표 등을 위한 예산을 센서스 실사 이전년도에 계획을 완전히 수립함으로써 당해년도의 집중적인 업무의 혼란을 피하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예산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기회 착수된 이러한 업무에 관한 예산은 다음해 센서스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등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점은 1975 년도에 있을 센서스에서는 조사원 수당의 현실화 문제이다.

1970 년대에 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고용임금의 증대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에서의 조사원의 적임자 채용은 더할 수 없는 난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합리적인 수당의 현실화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10년전인 1960년의 조사원수당 4,000 환에 비하면 1970년의 조사원 수당은 조금도 현실화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70년 센서스의 예산집행과정은 중앙보조금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지방보조예산은 비단 센서스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 각 부처에서의 지방보조 예산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억제키로 정부방침이 확정되고 당국의 70년 센서스 보조금 예산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센서스의 지방 보조금은 다른 업무와 달라 거의 모든 예산이 단기간에 집행(1개월)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집행과정은 많은 번거로움과 적시성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오는 75년 센서스 지방지원금의 집행은 각 시도의 내무국장을 재무관으로 임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3 . 조 사 구

가. 조사구의 종류에 대한 문제점

조사구의 종류는 각기 다양한 지리적 조건과 시설 및 생활형태의 특성별로 엄격하게 조사구의 종류를 분류해야 만이 조사구 관계자료의 이용가치를 높일수 있는 것이다. 별표 조사구 대조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66년과 70년 센서스 조사구는 특별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를 5~6종으로 구분하여 종류의 명칭만이라도 소의 지역에서 있어 실지 설정 과정에서의 오착으로 보통조사구와 준조사구의 특성이 무시되어 서로 도착된 모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1) 보통조사구지역을 한지조사구로

전지역이 보통조사구의 성격을 지닌 1개 동, 읍, 면을 기준가구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분할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340가구가 남아 인접조사구에 포함시키려면 기준기구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대로 340가구를 하나의 조사구로 설정하고 기준가구가 미달이라 해서 준조사구인 한지조사구로 특성번호를 부여했던 것이다.

2) 준조사구지역을 보통조사구로

육지에서 정기선박으로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낙도는 낙도 한지조사구로 설정하였지만 낙도에서도 수백가구가 거주하여 수개의 조사구로 분할했을때 기준 가구수에 달한 조사구는 전부 보통조사구로 특성번호를 부여했다. 사실상 지역조건면으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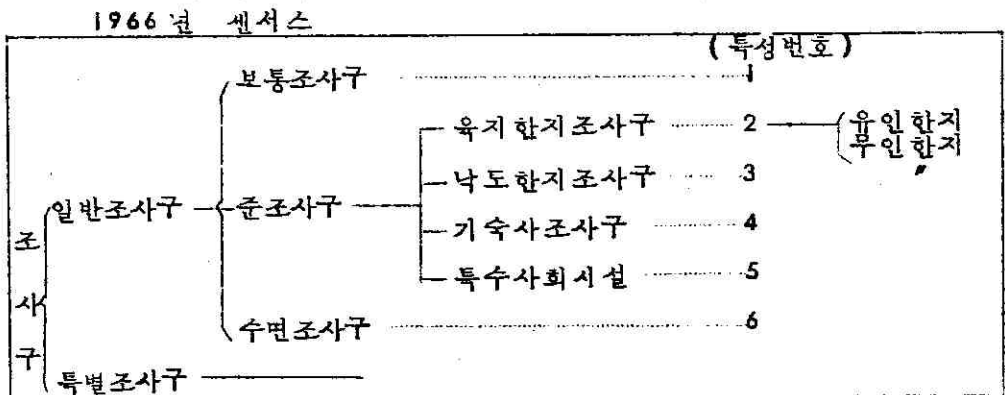
육지한지에 비하면 도서지역은 육지와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전부 한지에 해당된다 해도 파원이 아닌데 낙도에서 기준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조사구로 취급한다는 것은 원래의 조사구 설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개 선 점

1.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파지 센서스의 조사구는 본연의 목적인 지역 특성위주가 아니고 기준가구수에 채우친 경향이 다분함으로 성격상 보통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기실가구가 초과 되더라도 인접조사구에 분배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비록 기준가구에 미달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특성 위주로 보통조사구의 특성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2. 도서에 있어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등으로 연육된 섬과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군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섬조사구(도서조사구)로서 별도로 하나의 특성번호를 부여해서 육지와 섬조사구를 완전 구분토록 해야 한다.

센서스별 조사구종류 대조표



1970년 센서스

조사구	일반조사구	보통조사구	1	
		준조사구	육지한지조사구	2
			낙도한지조사구	3
			기숙사 조사구	4
	특수사회 시설	5		
특별조사구				

1975년 센서스 (안)

조사구	일반조사구	보통조사구	1
		한지조사구	2
		섬 조사구	0 (도서 조사구)
		기숙사조사구	3
	특별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4

∅ 육지일부에 도서포함 설정한 조사구

일본의 '70년 센서스

일반조사구	1	
특별조사구	○ 산악, 산림, 원야, 지대, 확대한 경지, 지소, 공원, 묘지, 무인도	2
	○ 확대한 공장, 학교지역, 철도용지, 항만, 비행장지역	3
	○ 사회시설 큰 병원이 있는 지역	4
	○ 형무소, 구치소가 있는 지역	5
	○ 자위대 지역	6
	○ 주유군 지역	7
	○ 50인이상의 단신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여관등 지역	8
	○ 수상생활자 지역 (수면조사구)	9

나. 조사구 설정상의 문제점

1) 기본도

'66년과 '70년 센서스에는 정밀한 지도가 없어 지형지물에 의한 명확한 조사구 경계를 구획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 '75년 센서스를 대비하여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한 지도를 제작중에 있다.

※ 여기서 문제사 되는 것은 각시부와 읍면소재지의 조밀지역에 대한 확대 작업이다.

각 시부만 하더라도 빗개시는 아직 충분한 기본자료조차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며 읍면·소재지에도 도시 못지 않게 조밀한 지역이 많은데 이를 어느 정도의 정밀한 자료에 의해서 확대 작성되느냐가 문제이다. 현재 경제통계과에서 금년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

2) 가구의 개수파악

조사구 설정당시의 가구수 파악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없으면 실사에서 가구수의 심한 격차로 조사상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다. 군부는 읍면 직원들이 관내 거주가구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도체에 있어서는 가구의 전출입이, 많고 신축주택의 격증과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가구가 많아 사실상 정확한 가구수를 파악하기란 극히 곤란하다. '70년 센서스만 하더라도 조사구 설정당시는 60~70가구로 설정된 조사구가 조사결과외 종합표에 의하면 심한 곳은 120~130가구로 증가된 조사구가 간혹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원의 업무량이 상상이외로 많아
져 집단 누락이 우려된다.

개 선 점

1. 그러므로 가능한 시부만을 사전에 잠정적으로 가구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구 설정에 유일한 참고 자료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
며 겹해서 작동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모든 변모양상과 가구의 분
포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방법은 과거와 같이 동직원이 조사하는 방법과 유보수 조사
원 배치등이 있으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각반장이 조사원이 되고 조사원의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간이한
조사표로 누구든지 설명문만 보고서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조사구의 확정

조사구 설정은 해당 지역내의 모든 지형지물과 가구의 분
포상황 및 지리에 대해서 능숙한 자가 아니면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과거 센서스에서는 각 동, 읍, 면 담당직원에
게 관할구역의 조사구 설정을 일임했었다.

그러나 각 동, 읍, 면 담당자들은 아권인수격으로 조사구 설정
기준범위내에서 지능적으로 조사구수를 늘리려는 경향이 (예산을
감안) 있고 심지어는 유명조사구를 조작하는 사실까지 발견된 지
역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조사구의 기준가구수가 60~80 가구라
면 가장 조밀한 지역을 80 가구로 그보다 약간 산재한 지역은

70 가구 그보다 좀더 산재한 지역은 60 가구로 이와같이 지역사정에 따라 합리성을 기술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는 기준 가구를 정의한 것인데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몇가지 예거한다면 부산의 경우 70년 센서스때 제출된 조사구 일람표를 검토한 바 매조사구가 60 가구씩 균일하게 설정 보고되어 현지확인한 결과 모두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전면 재설정 한 사실도 있으며 충남 논산의 경우는 1 가구를 하나의 조사구로 설정한 예도 있었다.

개 선 점

1. 이러한 불합리성을 방지하고 전조사원의 업무량을 균등화 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사구 설정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방에 일임하지 않고 조사구의 최종확정을 중앙 또는 각시도 지도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의 중앙지도원이 전국조사구를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일단은 각 동, 읍, 면 담당자가 조사구 설정 요령에 의해서 판내조사구를 기본도(청사진) 상에 직접 가설정토록 하고 가설정된 기본도에 의해서 중앙지도원은 지도상으로 심사확정하는 방법이다.

심사과정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로 하나 기본도에 가구마다 정확한 위치표시(산재지역만)를 한다면 도로와 등고선의 기록에 의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지도의 축적도에 의해서 가구와 가구간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되기 때문에 기본도만으로도

조사구의 합리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작업을 중앙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인력상 거창한 작업으로 생각되나 중앙지도원은 10명이 10일간 현지출장으로 전조사구를 충분히 심사확정할 수 있다.

4) 요도작성

요도는 동, 읍, 면 담당자각 조사구별로 요도용지에 알맞도록 확대해서 각조사원에게 배부되므로 조사원들은 말은바 조사구내의 가구 위치와 지형지물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 선 점

1. 요도작성에서는 인접조사구 상호간에 지역의 중복 또는 누락 관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기본도에서 요도용지에 전사할 때 조사구 경계가 정확해야 하고 조사원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조사구내의 가구 위치 및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정확을 기하도록 강조하여 요소 요소의 가구에는 지번 또는 문패, 성명까지도 기입해서 요도를 보고 누구든지 가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 선 전

1970년 인구 및 주택조사에서의 선전 방법은 그 어느 때의 센서스에서 보다는도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1970년의 센서스는 대량선전에 각광을 받고 있는 메스콤의 적극적인 활용은 특기할 만한 것이며,

이러한 선전은 전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등 국가의 모든 기관이 이 사업에 협조하고 출선해서 피조사자인 일반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의식과 「센서스 분위기」를 조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선전 내용을 나누어 보면

- (1) 특별조치 (대통령각하 담화문)
- (2) 유인물에 의한 선전
- (3) 기념우표 및 담배 발행
- (4) 가두선전 (선전탑, 프랑카드등)
- (5) 메스콤을 통한 선전
- (6) 극장 막간방송
- (7) 교통기관 (열차방송등)
- (8) 행정기관

등으로 대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선점 및 문제점

1. 특별조치

특별조치는 대통령 각하의 친서와 담화문 첨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 각하의 친서 하달

관계부처 장관 및 각 시, 도지사에게 대통령 친서의 하달

둘째 ; 전국 요소에 대통령 각하 담화문 첨부

이러한 조치는 각 중요기관의 장들로 하여금 본조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시키고 적극 협조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상가할 수가 있다. 차기 센서스의 기획담당자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인물에 의한 선전

센서스에서의 유인물에 의한 선전자료는 다양하다. 포스터, 표어, 가구선전문, 해설팜프렛(2종) 등이다. 특히 가구 선전문은 가구당 1매씩 배포함으로써 많은 선전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막대한 예산이 뛰따라야 했고 물론 이러한 방법은 메스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간벽지에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대량전달(메스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센서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는 과거와 달리 현저히 높아져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3. 기념우표 및 담배갑 포장지의 활용

관계기관과 절충하여 기념우표(9.25~10.10) 100만매와 기념일부인(9.25~10.10)을 전국 92개 중요 우체국에서 일제히 사용했으며 당시 담배중에서 수요가 제일큰 신탄진, 금잔디를 각 1000만갑씩 제작 판매하였다.

국민대중에게 그 수요가 절대적인 기념우표나 담배등을 이용한 선전 방법은 차기 어느 때의 센서스에서 권장하고 싶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념담배는 20대 이상의 흡연자들에게 절대적인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1일 평균 소비량도 650만갑(74년 5월 현재 14종)으로서 근래의 대량 선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담배 종류는 2종류에 불과했고 소비량도 단 3일간의 판매량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0년 센서스 때와는 달리 담배에 의한 광고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한 점을 미리 알아서 계획해야 한다.

또한 기념우표나 일부인도 체신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적어도 1년전에) 다른 행사에 의한 중복으로 선전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70년의 예로는 실지조사에 임박하여 절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점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4. 메스콤을 통한 계몽선전

과거와는 달리 대중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대량전달 방법 중의 하나는 메스콤이다.

이러한 매스컴의 이용 방법에는 유인물과 시청각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유인물

신문을 통한 실시광고, 보도, 해설, 기사, 사설등과 잡지(월간, 주간) 등의 기사 PR과 광고등을 들 수 있다.

나. 시청각

라디오를 통한 뉴우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중계, 대담방송과 T.V를 통한 뉴우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중계 대담방송등과 대한뉴우스의 계몽선전영화 제작과. 벽지의 엠프방송 등이다.

이러한 1970년의 센서스의 대국민에 대한 계몽선전은 중앙과 지방에서 일제히 실시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들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대량보급된 라디오와 T.V는 본 센서스를 PR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라디오의 보급율은 전가구에 비해 70%의 가구가 소유(1970년 센서스 분포 결과)하고 있어 선전 매개체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1970년 센서스 계몽선전 계획표 참조)

75년 센서스를 실시할 즈음에는 라디오의 보유율은 85%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T.V수상기도 더 많이 보급될 것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PR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기 센서스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특히 지난 '70년 센서스에서는 경기도과주군의 한 편민은 자기
집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방송국에 투고하여 물의를 일으킨 좋은
예를 들을 수 있다. (1970.10.17 자 TBC 방송)

또한 계몽선전의 시기도 적당한 시기를 잘 포착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효과를 얻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 방법은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기 마
련이고 (특별조치 제외) 이러한 뒷받침이 없을 때에는 자연히 소
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난제는 기획단계 (특히 예산) 에서 사전에 세밀히 검토되
어야 한다.

특히 메스콤 영향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을
연구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인
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72년 3월 10일부터는 총리훈령 102호
에 의거 정부의 모든 광고대행은 사단법인 홍보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짧은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 훈 련

1970년의 인구 및 주택조사에서의 조사원 훈련은 다음과 같은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가. 각급 지도원 및 조사원훈련

	훈 련 대 상 자	일 자
1 단계	1. 중앙지도원	8.10 ~ 8.14 (5일간)
2 단계	2. 시 : 도담당관 및 지도원 당국 상주 지도원	8.18 ~ 8.20 (3일간)
3 단계	3. 시 . 군 지도원	8.25 ~ 8.27 (3일간)
4 단계	4. 동, 읍, 면 지도원	9. 7 ~ 9. 9 (3일간)
5 단계	5. 조사원 및 보조 조사원	9.23 ~ 9.26 (4일간)

각 단계별 훈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 중앙지도원

당국 각과에서 센서스 유경험자 또는 유능한 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본 조사에 대한 각급 훈련 및 일선지도를 담당할 중앙 교관으로 양성하였다.

2 단계 ; 시 . 도 지도원

각 시도의 통계과장 인구계장, 담당직원을 중앙에 소집하여 시 . 도의 지도원을 양성

3 단계 : 구, 시, 군 지도원

구, 시, 군의 통계계장 및 담당직원을 시, 도에 소집하여
관할구역의 동·읍·면 지도원 훈련 교관으로 양성

4 단계 : 동·읍·면 지도원

각 동·읍·면에서 2명(총무계장, 담당직원)을 선발하여
조사원을 직접 훈련시킬 교관으로 양성하였다.

5 단계 : 조사원 훈련

소정의 훈련을 받은 각 동·읍·면 지도원으로 하여금
조사원 훈련을 담당토록 하였다.

나. 훈련방법

조사요령과 조사표기입 방법에 중점을 두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원들이 실무에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사용된 교재는 주로 「조사요령서」에 의존했다.

특히 훈련기간중에는 상호실습과 종합평가를 실시 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점

1970년 센서스 조사원의 훈련계획은 이전의 어느 훈련계획보다
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계획은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조사원 훈련에 보다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원 훈련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간략하고 중점적인 훈련이 아쉬웠다. 예를 들어 상주개념을 너무 깊숙히 훈련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피 훈련자로 하여금 확실한 내용을 잘 알수 없게 한다던지 하는 불필요한 판단이 뒤따르게 하는 문제점은 제거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중앙 지도원의 정예화
2. 전달식 훈련의 개선 (가능한 선까지)
3. 훈련방법의 개선 및 Chart화
4. 중요한 도시지역의 중앙통제

(1) 중앙지도원의 정예화

70년 센서스훈련에 동원된 본부의 중앙지도원중 40여명을 상대로 5일이상 훈련을 실시 하였으나 실제 동원된 요원은 약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앙지도원은 국내 각파에서 차출되었으나 훈련결과에 의한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안했다. 이러한 인원으로 하여금 각급 지도원 및 조사원 약 81,000여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같이 전국의 방대한 지역을 소수의 중앙지도원으로 하여금 훈련을 전담시키는 것은 극히 불가능 함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① 당국의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중앙지도원을 차출하여 센서스업무에 정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킨다음 각 시, 도별로 3~4인 이상으로 전담반을 편성시키고 시, 도별로 파견 상주

시켜 조사전반에 걸쳐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그리고 중요한 시부에 대해서는 조사원 훈련을 중앙지도원으로 하여금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그 지역에 대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조사여부를 부분적으로 Check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전달식 훈련의 개선

센서스를 위한 종래의 훈련방법은 모두 전달식 이었다.

중앙→시·도지도원→구·시·군지도원→동·읍·면지도원→조사원

이러한 전달방법에 의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A군과 B군의 조사방법이 모호하여 시·도 또는 중앙으로 장거리 전화에 의한 직접 질문하는 사례는 1970년 조사담당 관계자는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도전체를 재 조사해야 했고 어떤 시·도의 관계자는 자기판단에 의한 임의의 훈련을 실시 함으로써 문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조사는 조사요령서에 없기 때문에 아예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달식훈련으로 인한 폐단은 너무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여 가능한 선까지의 전달식 훈련 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Slide나 Tape record 등을 이용한 훈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중앙 지도원은 물론 훈련이 잘된 시·도 지도원과 합동으로 각급 훈련에 참여토록 하여 직접 혹은 간접(일석)적으로

지도케 하므로 훈련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② 위의 ①과 같은 방법으로 관계관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훈련일자를 시차별로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부산시 그리고 기타의 대도시에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각 동별로 조사원의 실제활동과 가구별로 조사여부를 확인토록 행정조치해야 한다.

(3) 훈련방법의 개선 및 Chart화

지금까지의 훈련방법은 조사요령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로 조사의 질을 높일수 있는 훈련이 불가능했다.

문제점 및 개선점

조사원의 훈련은 시청각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실습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충분히 습득시켜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훈련방법중의 하나이다. 특히 조사요령서를 통달한 조사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에 임했을 때는 이외의 문제점이 생기게 됨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다음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① Chart화

종래의 조사요령서에 의한 훈련방법을 지양하고 시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원의 전 훈련과정을 차트화하여 동·읍·면 단위까지 배부함으로써 효과를 배가 시킨다.

② 사례연구 및 실습

조사원이 실지조사에 임했을 때의 문제점은 상상 외로

많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시간을 사례연구 및 실습에 할애 해야 할 것이다.

1960년을 제외한 1966년 및 1970년은 일반적인 조사기준만이 조사요령서에 있을 뿐 사례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려니와 아무런 기록도 없다. 1975년 센서스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별책으로 발간 배부되어야 한다.

(예상 질의응답서등)

실습의 경우 대부분 훈련이 끝나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훈련상의 문제는 열번의 이론 강의보다는 한번의 실습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실습은 물론 적당한 지역을 선택하여 조사이전의 실습을 책임관 지도하에 시행)

(4) 중요한 도시지역의 중앙통계

전국 중요도시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당국에서 직접 시도함으로써 인구조밀지역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 대전, 인천시 등은 당국의 중앙지도원을 차출하여 현지조사를 직접 Check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조 사 대 상

가. 상주개념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통상 상주개념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1970년 센서스에서 다음과 같은 상주개념에 입각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 「조사기일(10.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조사일을 전후하여 3개월에 미달되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 살려고 하는 사람(또는 장소)을 말한다.

2)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중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을 위하여 잠시 집을 떠나있는 사람중 3개월이 미달된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이상인 경우는 현재 살고있는 장소에서 조사한다.

3) 병원이나 요양소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중 조사일 현재 3개월 이상일 때는 병원에서, 3개월 미만일 때는 자기 집에서 조사된다.

4) 배를 타는 선원이나 항공기 탑승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본가에서 조사되며 가족이 없는 단신자는 정박지에서 조사된다.

5) 국군에 입영하여 병사나 군함내에 살고있는 사람은 소속된 부대에서 조사되며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영외에 거주하는 자는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조사된다.

6) 기숙사 또는 하숙 등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기숙사나 하숙 등에서 조사된다.

만일 학생이 일시적인 병 또는 불일로 그곳을 떠나 잠시 자기집에 귀향했을 때에도 자기집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기숙사 또는 하숙집 등에서 조사된다.

7) 병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나 산모는 자기 집에서 조사된다.

8) 외국인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조사일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조사된다.

위에서 설명된 1~8 까지가 1960, 1966 및 1970년의 센서스에서 의 상주개념이다.

문제점

상주인구 (De-jure) 란 현주 (De-factor) 인구 조사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정한 시점에서의 관찰시각에, 그리고 특정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지역에 귀속시키는게 아니라 일시 현재 인구와 일시 부재 인구를 가감한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주인구 = 현재인구 + 일시부재인구 - 일시현재인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우리나라 인구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1949년과 1955년에는 현주인구 조사방법을 채택했고 1960년 이후 1966년과 1970년 센서스에서는 상주개념에 의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0년 이후 각 시·도에서 매년말에 실시하는 인구조사도 이러한 상주개념에 의한 조사가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주인구 조사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주로 다음두가지 즉

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 째

UN의 권고와 상주인구조사가 우리나라 인구통계에서의 이용도와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고

둘 째

조사상의 용이성과 정밀성이다.
상주조사는 중복될 우려성이 많은 반면 현주조사는 누락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센서스 관리자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주조사방법이 오히려 현주조사방법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하에서는 더 나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여하한 방법에서라도 누락과 중복을 최소로 줄여야 되겠지만 아무리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누락과 중복은 어느 과정에서든 발생되기 때문이다. 양자의 Error가 어느 경우에도 발생한다면 누락 오차는 중복오차에 비해 그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때문에 현주조사방법에서 상주조사방법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선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주와 현주조사 방법에는 각기 장,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상주개념은 「3개월」의 조사편의상의 기간 시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3개월은 어느 부 정확한 시점에서 의 조사대상이 문제가 되나 조사원이 매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상주개념의 활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오늘과 내일의 현거주지가 다른 우범지역이나 사창가 또는 특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3개월의 상주개념으로만 포착된다면 거의 누락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주개념상의 3개월은 문제해결의 편의상 중복과 누락을 최소한 줄이는 한 방법으로서만 제시되어야 하고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실시할 1975년 센서스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주와 현주의 개념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혼용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상주개념중 1)을 제외한 2)~7)까지는 1970년 센서스에서 상주와 현주를 병행하여 조사했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 : 일본의 상주개념

(1) 상주자라 함은 10월 1일 현재 그 장소에서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최근 이사해서 아직 3개월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10월 1일을 전후 통산해서 3개월 이상에 걸쳐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가끔 여행 또는 출타 등으로 일시 자기집에 없는 사람은 부재기간이 3개월 이상이 못되었을 때는 자택에서 조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자택에서 조사하지 않고 여행지 또는 나가있는 곳에서 조사한다. 따라서 담당조사구내에 10월 1일의 전후를 통해서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여행자나 집을 나온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조사하게 된다.

(3)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3개월 이상에 걸쳐 거주한 곳도 없고 살려고 하는 의사도 없는 자는 10월 1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조사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장소에서 조사한다.

① 기숙사, 하숙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그 기숙사, 하숙집에서

② 병원, 요양소 등의 입원환자 중에서

※ 기거 3개월이상 입원한 자.....입원한 곳에서

※ 입원해서 3개월이 못된 자.....자택에서

③ 선박승무원자택에서

④ 자위대의 영사내 또는 선박내의 거주자는 그 영사 또는 선박에서

⑤ 형무소, 구치소의 수용자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과 소년원, 부인보도원의 수용자는 그 수용소에서

나. 1970년 센서스에서 의 누락과 중복사례

1970년 센서스에서 인구를 대상으로한 조사중 가장 분계가 된 누락이나 중복된 다음 사례를 열거하여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물론 다가오는 1975년에 있을 인구센서스에서는 문제점 등을 시정 내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조사기일을 전후하여 이동된 자

문제점

조사기준일을 전후한 즉 10.1 ~ 10.7 사이에는 인구의 자연적인 이동이 가장 많을 때이다.

특히 가을철의 이사 등은 이동의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를 위한 준비조사 (pre-Listing)가 완료된 가구가 본 조사의 실시 이전에 인접조사구 또는 동, 읍, 면과 구, 시 군등을 달리한 타지역으로 진출했을 때 이전된 장소에서 조사원이 질문하면 전 거주지에서 준비조사를 본 조사로 오인하여 조사된 것으로 응답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가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상당한 수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한다.

개선점

이러한 문제는 조사원이 상대지역에서의 조사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또는 중복을 피해야 한다.

특히 조사요령에서의 예시는 물론 조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훈련이 필요하며 주민세, 오물세 등을 염려하여 조사를 기피하여 전가구가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2) 다방, 음식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문제점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가가 있어 출퇴근 하는 자

2. 본가가 있으나 출퇴근하지 않는 자

3. 영업장소에서 상시 거주하는 자 등

위에서 설명된 1~3까지에 거주하는 자들은 거주하는 형태가 특수하여 대부분의 조사원들은 누락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일정한 거주지가 있어 출퇴근하는 자는 모두 현 거주지에서 조사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독립된 거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착하기에 극히 곤란한 점이 많다.

(2)일정한 거주지가 있으나 고용형편상 잠시 (예를들어 월급 등 일정한 보수를 타서 자기집에 전해주는) 거주지를 방문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3)현재 성업중인 영업장소에서 상시 거주하는 자는 유형·무형으로 가장 많으며 누락될 위험성이 가장 많다. 대개의 조사원은 특히 다방 등에서 침식을 하고 있는 자를 소홀히 처리하여 누락시키는 경향이 많다.

개선점

위와같은 특수한 조사대상이 많은 지역의 조사원들에게는 많은 실질적인 예를 많이 들어 중점적인 훈련을 시도해야 하며 누락과 중복착오를 다음 사례를 중심으로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다방 : 특히 중심가 다방의 종업원은 마담 1인 차를 나르는 여자 3~4인, 주방장 및 보조원과 청소인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식점 : 마담 1~4인정도, 홀의 종업원 2~5인 주방에는 보통
3인 이상 10명정도

아무리 작은 소규모의 다방과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대략 위와같은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해서 조사원들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사람 한사람 체크 하면서 조사해야 된다.

1. 본가 유무의 확인

<가정 1> 본가가 있다면 : 어느곳인가를 묻고 지방일 경우는 자기 본가에서의 출발일자와 관계없이 현재있는 장소에서 조사 되어야 한다.

<가정 2> 본가가 있다면 : 거리 (시내의 경우) 의 원근을 막론하고 출퇴근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정 3> 본가가 있다면 : 출퇴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가끔 방문하는 (1주일 또는 월 1~2회) 가꾸주는 자기집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그외의 종사원은 모두 현재의 영업장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 이때 영업주와 동거하고 있으면 영업주의 가구와 함께 영업사용인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가정 4> 본가가 없다면 : 성업중인 영업장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는 현 거주지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위의 가정 이외의 사람도 끈질긴 인내력으로 포착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다방의 경우는 주방장이나 차를 나르는 사람등 한사람 이상의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비조사에서 철저히 가려내어 본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숙박업소 (호텔, 여관, 하숙집)

접객업소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각종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형태는 다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접객업소에서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영업사용인 (호텔의 각종 종사원과 여관 및 하숙집 등에서 고용된 마담, 심부름하는 사람 조바, 청소부등) 과

둘째는 이러한 장소에서 장기 또는 단기로 투숙하고 있는자들을 말한다.

문제점

일정한 숙박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주인가구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으나 응답자나 조사원의 실수로 인한 누락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장기 혹은 단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중 조사대상 여부를 가리기란 극히 곤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선점

1. 숙박업소의 영업사용인중 가까운 거리에 자기집이 있어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업원은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조사되어야 한다.

2.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중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모두 조사대상이 되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은 별도설명)

(1)잠시 용무가 있어 투숙중인자

(2)일정한 거주지가 있으나 사업상 각지를 순회하며 투숙중인자
단, 이러한 여건이 해소되면 곧 귀가할 자

(3)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연예인으로 장기투숙중인자

위에서 설명된 (1)이나 (2)는 자기집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2)의 경우는 가구주가 아니고 가구원 혹은 단신자 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우범지역 또는 사창가

시부의 중심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사창가와 우범지역은 가장 문제되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준비조사에 Listing 하여 놓은 가구원이 수시로 이동이 많고 또한 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가장 높아 조사상의 애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물론 이러한 조사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다른 조사구의 조사원에 비하여 조사진행상의 애로는 훨씬 많은 것이다.

조사방법의 개선

이러한 지역이 특히 많은 지역의 정보를 시·도 별로 사전에 입수하여 조사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특수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중복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소지한 주민등록증에 의한 명부를 작성토록 해야한다)

1. 조사구를 설정할때 특수지역으로서 인접조사구와 별도로

조사구를 설정하고

2. 2명이상의 조사원을 한 조사구에 일시에 투입하여 단시 일내에 조사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조사 대상자중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자는 포착된 현주소지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3. 또한 조사구의 가구수를 적게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협회나 조합을 통하여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동등가의 각 가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케하거나 협회장 또는 조합장을 통하여 협조토록 조치해야 한다.

5) 특수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자(가구)

①음막, 토굴에서 거주하는 자(가구)

②선박에서 사는 수상생활자(가구)

③보통민가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거주하는 화전민

④사찰, 암자등에서 거주하는 승려

⑤교회, 성당, 수도원, 수녀원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신도가 신병을 이유로 집을떠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⑥유원지등에 상시 또는 일시 거주하는 자

※이경우 가족전체나 가구원중 한사람이 상시거주하는가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된다.

⑦그밖에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자 등이다.

문제점 및 개선점

특수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많이 누락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조사원의 세밀한 관찰력 없이는 모두 누락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1. 누락되기 쉬운 장소를 구체적으로 또는 알기쉽게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열거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2. 조사원훈련시 집중적인 훈련을 시도함으로써 가구나 가구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집단생활자

동일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중, 고등, 대학교, 양재, 자동차학원 등의 기숙사) 또는 공사기관의 기숙사

나) 공업단지 기숙사 또는 합숙소

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호시설 및 경쟁시설

예 : 양노원, 불구원, 재활원 (자활원)

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시설

예 : 보육시설 (코아원), 정신박약아 시설, 불량아 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마) 특수병원, 요양소 및 수용소

예 : 결핵병원, 나병환자 수용소, 결핵환자 요양소.

바) 기 타

예 : 윤락여성 직업보호시설, 수녀원, 건설사업소의 합숙소.

문제점 및 개선점

위에서 열거한 이외에도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택에 세를들어 여럿이 함께 자취하는 경우와 하숙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 등도 하숙생의 부분만은 집단생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것중 가)와 나)를 제외한 기타의 집단생활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로 묶어 조사되지만 가)와 나)는 다르다. 이 가)와 나)는 종래의 조사방법에 의하면 50명이상이어야 한 조사구(기숙사 조사구)로 독립되지만 50명이하일 경우에는 준 가구로서 일반 조사구에서 보통가구와 함께 조사되었다.

1. 위에서 설명된 기숙사 조사구(공단 기숙사 포함)는 종래의 50명에서의 제한을 10명으로 낮추어 설정해야 하며 상한선도 해두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용검사 과정에서 보통가구에 6명 이상의 준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가구로 따로 분리하는 2중 작업과정이 있고

둘째, 기숙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인 기숙사도 있음) 응답자를 일일이 면접하여 조사하지않고 비치된 List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당히 조사하며, 특히 연령관계에서는 실제의 자기나이와 다른 중요한 오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학년별 또는 건물층의 층별로 인원수를 적당히 묶어 피조사자를 일일이 면담하여 조사토록 해야한다.

2. 조사기간중 기숙생 중에서 자기집에 불일이 있거나 신병

으로 인하여 잠시 자기집에 가있는 기숙생은 모두 기숙사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물론 자기 본가에서는 일단 기숙사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장기간(적어도 2주이상) 신병치료를 위해 본가에 와 있을 경우에는 본가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설명된 집단가구나 가구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볼 때 관리자 또는 그 외에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될 우려가 가장많은 곳이 바로 이 집단거주자 들이다.

1970년 센서스에서 의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의 S윤락여성보호소는 보호여성이 23명이다.

담당조사원은 조사표 5매를 관리인에게 주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간략한 내용설명을 하였다. 그 관리인은 총 23명의 보호여성중 3명을 제외한 20명을 비치된 개인 신상명세서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한 후 이들 후에 재방문한 조사원에게 되돌려 주었다. 조사표를 받은 조사원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긴뒤 돌아갔다. 이때 당국의 직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사에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 3명누락

※ 이 관리인은 조사당시 3명의 일시 부재자를 제외한 것이다. 즉, 1명은 맹장수술로 시립 북부병원에 입원중이며 5일 후에는 퇴원하며, 나머지 2명은 친척집을 3일간 예정으로 잠시

그 지역을 떠났다. 이 경우에는 조사원의 잘못으로 조사되어야 할 대상자를 누락시킨 것이다.

(2) 기재사항의 오차

여기에서 집단 거주하는 여성(유락)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신분을 감추는 예가 많다. 자기의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 출생지 까지도 교묘한 수단으로 사실과 먼 응답을 함으로써 응답상의 오차를 낳게 한다. 이러한 경우 조사원은 남자보다 여자가 적합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잘 유도하여 질문토록 해야 한다.

(3) 조사원의 직접조사

집단가구중 가구원이 많은 지역 조사원은 대부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리인 등에게 기록케하여 조사를 그릇치는 경향이 많다. 한사람 한사람 빠진 사람없이 면담하도록 당부해 두어야 한다.

※ 「행정조치」로서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리인은 명부를 작성토록 한다.

7) 단신자 및 동거가구

가) 단신자 가구

가구의 성질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한 주택내에 주가구와 별도로 세를든 단독 가구가 있다면 조사의 정의에 따라 주인가구에 포함되어 조사될 수도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단독가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구의 정의에 유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단신자가구의 조사대상은 앞에서 설명된

1~7까지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수 있기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해야 한다.

나) 동거가구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가에는 많은 가구가 한 거처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기 이전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정확한 가구수를 파악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개선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특히 시부는 앞에서 설명한 지역중 누락되기 쉬운 곳(예: 다방, 여관, 움막, 다리밑, 판자집)을 준비조사때 일일이 매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여부를 체크하면서 실지조사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구번호표를 가구별로 붙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구가 사는 일반주택은 물론 사람이 살지않는 Building, 판청등의 수위실, 공공시설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가구의 실재여부를 조사토록 해야 한다.

시점차에서 오는 Omission

1970년 인구센서스의 기준시점은 10월 1일 00:00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핏보아 간단히 해석되나 37초에 1명이 출생하고 105초에 1명씩 사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태조사에서 시점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제 점

10월 1일 현재의 시간은 9월 30일 밤 12시와 같은 시간이며

10월 1일 0시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근사한 예를 들면
1970년 인구조사 요령서의 11 Page 하단에서 새겨붙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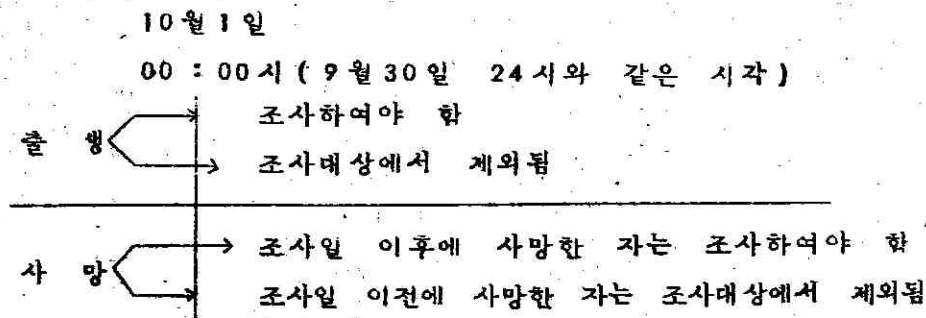
(주의) ; 「조사거일은 10월 1일 이므로 10월 1일 0시
(밤 12시) 이전에………」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영시」라는 표현으로서 오견임을 알
수 있으나 괄호안에 든 밤 12시는 누구든지 10월 1일 밤 12시로
착각하기 쉬운 예이다.

개 선 점

출생과 사망에 의한 조사대상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1.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조사되며
2. 반대로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는 조사되지 않
는다.
3.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4. 반대로 10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는 조사 되어야 한
다. 즉, 다시 말하면 9월 30일 이전까지 있었던 자는 조사되
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표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조사대상 여부이다.



8) 외국인 조사

1970년 센서스결과에 의한 외국인은 30,402 명으로서 1966년의 33,122 명에 비하여 2,720 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를 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 외국인 중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1966년 29,151 명에서 1970년 26,314 명으로 2,837 명 (9.7%) 이나 감소되었다.

(센서스 연도별 외국인 대비표 참조)

외국인 대비 (1966 ~ 1970)

		1970 (A)	1966 (B)	(A)-(B) (C)
전	국	30,402	33,122	△ 2,720
호	주	52	37	15
캐	나	57	72	△ 15
자	유	26,314	29,151	△ 2,837
프	랑	107	39	68
독	일	240	122	118
이	탈	39	37	2
일	본	644	1,052	△ 408
필	리	26	56	△ 30
스	웨	10	19	△ 9
영	국	110	87	23
미	국	2,451	2,187	264
기	타	352	127	225

문 제 점

이러한 외국인의 감소현상 특히 중국인은 소수의 누락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조사방법에서 오는 차이는 오히려 1966년에 비하여 1970년이 그 대상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966년의 국적본위 조사에서 1970년에는 가구본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시켰던 것이다.

다음은 1966년 및 1970년의 조사대상의 대비표 이다.

정 의 대 비 표

1966 년	1970 년
<p>1.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자</p> <p>(1) 외국 군인 및 군속과 그의 가족</p> <p>(2) 외국의 외교관과 그의 수행원 및 그들의 가족</p> <p>(3) 외국인중 형의 확정여부를 막론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p> <p>2. 조사대상</p> <p>위에서 설명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외의 외국인</p> <p>은 체류기간이나 목적에</p>	<p>1.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자</p> <p>1966년과 동일한 방법</p> <p>2. 조사대상</p> <p>1966년의 조사대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나</p> <p>가구본위로 범위를 확대하였</p>

1966 년	1970 년
<p>관계없이 국적분위로 모두 조사되었다.</p> <p>1. 조사일 현재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외국인으로 조사되었다.</p> <p>(2)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조사당시까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 쪽은 한국인으로 조사하였다.</p> <p>(3) 국적을 취득 못한 한국 여인과 동거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되었다.</p> <p>(가) 중국인 남편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외국인으로 조사하였으며</p> <p>(나) 중국국적을 취득 못한 한국여성은 본국인에 준하여 조사되었다.</p>	<p>다.</p> <p>1(1)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물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도 외국인으로 조사하였다.</p> <p>(2) 앞의 (1)에서 설명됨</p> <p>(3) 66년과 달리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여성은 국적취득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가구에 포함시켜 조사 되었다.</p> <p>(가), (나)도 같은 방법임</p>

1966 년	1970 년
(4) 외국인 기업체에서 상주하며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은 외국인 가구와 분리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4) 66년과 동일한 방법임.

이상과 같이 1966년과 '70년의 조사대상에서 정의상의 차이는 국적별 조사에서 가구본위 조사로 범위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조사상의 개념에 의한다면 '66년 보다 '70년의 외국인 수는 당연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겠으나 오히려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 선 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화교협회에 의하면 다소의 중국인이 본국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센서스에서는 일단 누락이나 혹은 조사의 소홀로 단정하여야 하며 '75년에 있을 외국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유의 검토되어야 한다.

1. 조사방법의 개선

모든 외국인은 자제식에 의한 조사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즉, 지난 센서스에는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는 자체식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는 우리나라내에 장기 거주하

고 있는 중국인에게는 종래 방법인 타계식방법을 이용하고, 기타 외국인에게는 자계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범위만 간단히 되어있고 조사표의 기입방법 또는 조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소홀한 조사가 될뿐만 아니라 막상 조사에 임했을 때는 적당히 헤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구두의 전달 교육방법을 지향하고 가능한 실무를 위주한 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조사요령서를 따로히 한 Part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에서의 예시와 조사요령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조사대상지의 확인 및 면담절차

외국인은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포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거주지는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거주지 확인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히 다음 장소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 Hotel, 여관, 관광인을 상대로한 민박시설등에 대해서는 지배인이나 관리인 또는 이와같은 시설의 관리층에 있는 사람의 충분한 협조를 얻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에 영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안.

둘째, Hotel 등의 관리층 종업원에 대한 일괄훈련을 실시케 하여 자기 Hotel 내에 있는 손님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이때 적당한 수당지급이 고려되어야 함)

(나) 중국음식점

대부분의 중국음식점은 중국인의 관리하에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어느곳이던 찾아 볼 수 있다.

내, 외국인을 잘 식별하여 조사토록 유의해야 하며, 또한 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조사에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7. 표 본

문 제 점

1) 조사구의 혼동

조사구별로 지정된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즉 표본조사구에서는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같이 사용케 되었으나 전수조사표만을 또는 표본조사표만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비표본조사구에서는 전수조사표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같이 사용했거나 표본조사표만을 사용한 경우, 준조사구에서는 표본조사표만을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전수조사표만을 또는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같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추정과정에서 이러한 조사구는 별도 취급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조사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오차가 생겼을 것임.)

2) 대상 거처의 불규칙 변경

표본조사구에서는 정해진 출발번호에 해당하는 거처부터 매 2번째의 거처를 표본 거처로 하여 표본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표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표본 거처내의 가구가 그 다음 거처나 또는 그 앞의 거처내의 가구수 보다 많을 때에는 표본거처를 가구수가 적은 거처를 임의로 바꾸어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표본거처로 추출되어야 할 거처를 가구수

가 많기 때문에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거처내의 가구수가 적은 거처를 임의로 바꾸어 조사한 예이다. 만일 많은 수의 조사구가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원에 의해서 기피된다면 결과의 추정을 불능케 할뿐만 아니라 또한 편기 (Bias)를 가져올 수 있다.

3) 대상조사구 임의변경

행정구역부호 및 조사구번호순으로 매 5번째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지정하였으나 표본조사구의 가구수가 인접조사구의 가구수보다 많을 경우 인접조사구와 표본조사구의 번호를 서로 바꾸어 가구수가 작은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구를 임의로 변경하여 표본조사구로 하는것은 대상거처를 바꾸어 조사하는 경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동읍면 지도원 또는 조사원이 임의로 변경 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8. 사 후 조 사

가. 조사방법

1) 1960년 및 1966년 사후조사방법

1960년 및 1966년 사후조사는 일원추정법 (Single system Estimation) 즉 센서스 실사치를 P.E.S 추정치로서 직접 대치시키는 방법에 의거 하였다.

일원추정법에서는 센서스보다 자질이 높고 철저한 조사원에 의하여 센서스 당시에 해당표본조사구간에 살던 사람을 다시 재조사하고 센서스와 P.E.S 조사내용의 불일치는 현지확인조회 (Field Reconciliation) 을 통하여 P.E.S 조사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P.E.S 추정치는 직접 센서스 실사치를 수정하는데 이용된다.

2) 1970년 사후조사방법

1970년 P.E.S는 과거 양 P.E.S와는 달리 2원 추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 방법은 일원추정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P.E.S자료가 그 질에 있어 센서스보다 Coverage나 내용이 모두 완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양조사 (센서스와 P.E.S) 간의 독립성 (Independence) 을 이론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조사가 더 완전하기를 강조하지 않는다.

1970년 P.E.S에서 채택한 이원추점법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본다.

가) 어느 한 조사 (P.E.S)의 질보다 양조사의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나) 센서스 당시의 인구를 P.E.S에서 다시 조사 (Reconstruct) 하기 보다는 P.E.S조사시 표본지역에 사는 인구만을 조사하고

다) 일원적 대조방법을 취하며 (One-Way Matching)

라) P.E.S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현지 확인 대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점등

이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조의 곤란과 대조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나. 조사시점

1970 . 11 . 20 .

다. 조사항목

인구에 관한사항

- 1) 이 름
- 2) 가구주와의 관계
- 3) 성 별
- 4) 생년월일
- 5) 혼인상태
- 6) 취학여부
- 7) 학 령

- 8) '70년 10월 1일현재의 거주지
- 9) 조사여부(10월 1일 당시)
- 10) 조사장소 (")
- 11) 이주년도
- 12) 이전거주지
- 13) 5년전 거주지
- 14) 출생여부
- 15) 사망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

- 1) 주택의 종류
- 2) 건물의 건축시기
- 3) 주택의 소유관계
- 4) 주택의 층 당수 및 등기 가구수
- 5) 주택의 층 전평수
- 6)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라. 표본추출방법

P.E.S의 표본은 1970년 총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20% 표본 ED에서 $\frac{1}{2}$, 80% 비표본 ED에서 나머지 $\frac{1}{2}$ 이 추출되었다.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률은 1/500로 하였으나 3대도시(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E.D 추출률은 여타지역의 4배로 하여 먼저 E.D를 추출하고 각 추출 E.D를 4개(4 Segments)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씩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추출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는 사후조사 표본에서 제외한다.
- 2) 추출된 가구의 기대치는 총가구의 1/500인 약 2,000이다.
- 3) 한 조사구의 가구수가 120을 넘지 않으면 이를 한개의 조사구로 하고, 120을 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Measure of Size를 부여한다.

<u>가 구 수</u>	<u>Measure of size</u>
120 - 199	2
200 - 279	3
280 - 359	4
360 - 439	5
등	

Measure of size가 2, 3, 4, 5등인 조사구는 2, 3, 4, 5 등의 부분(Parts)으로 나누어지며 개개의 부분이 실제로 하나의 조사구로 간주된다. 만일 일개 조사구의 가구수가 50미만이면 그 조사구는 바로 다음 조사구에 합친다.

4) 3대도시(서울, 부산, 대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추정을 위해서 추출률을 여타지역의 4배로 하여 각 추출 ED를 4개(4 Segments)로 분할하여 그중 하나씩을 추출한다.

5) 추출집단(Estimating groups)은

- (1) 3대도시
- (2) 모 든 시

(3) 모든 군

(4) 전국이다

6) 보통조사구에 대해서는 3대도시, 여타시와 모든 군별로 서로 다른 출발번호를 주어 계통 추출 방법을 택한다.

7) 표본 ED의 모든 가구를 조사한다.

3대도시의 경우 추출된 표본 segment내의 모든가구를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총 추출률은 1/500로 된다.

8) 육지 한지 조사구와 낙도한지 조사구에서는 하나의 ED를 추출한다.

이 하나의 ED는 육지한지 조사구에서 추출한다.

추 출 표 D

	보 통 표						80% - Non Sample			육지한지 조사구 및 낙도한지 조사구			기속사조사구 및사회복지시설 조사구
	20% - Sample			Measure of size 의 수			Measure of size 의 수			PD수	추출율	PES 의 ED 수	
	PD수	Measure of size 의 수	추출율	PES 의 PD 수	Measure of size 의 수	추출율	Measure of size 의 수	추출율	PES 의 ED 수				
3해 도시 (서울·부산·대구)	4,400	4,380	$\frac{1}{50}$	88	17,596	$\frac{1}{200}$	17,783	$\frac{1}{200}$	89	
기타도시	2,103	2,128	$\frac{1}{200}$	11	8,417	$\frac{1}{800}$	8,601	$\frac{1}{800}$	11	13	PES에서 제외
모든군	8,544	8,701	$\frac{1}{200}$	43	34,181	$\frac{1}{800}$	35,801	$\frac{1}{800}$	44	625	$\frac{1}{500}$	1	
총 계	15,047				60,188					638			

마. 대조 작업

1) 같은 조사구 (비 전입자) 의 대조

1970년 10월 1일 당시 (센서스 당시) 의 거주지와 P.E.S 시 조사받은 장소가 같은 사람에 대한 대조작업 즉, 양 조사시의 거주지가 동일 조사구인 사람에 대한 대조작업이다.

일차적으로 P.E.S에 나타난 센서스시 가구주의 이름으로 해당 센서스 종합표에서 가구주의 이름을 확인하여 대조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의 센서스 조사표에서 가구원 개개인에 대한 대조작업을 했다.

그러나 센서스 종합표에서 가구주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추가 대조작업을 시도했다.

가) 센서스때의 정확한 주소나 조사받은 장소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주어진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가 될 수 있는 사람 (예,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처 또는 장남등) 의 이름으로 가구주를 대치시켜 대조함 (전가구비 대조의 경우)

나) 가) 의 대조작업에서 가구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센서스 종합표상의 가구주 이름중 비슷한 사람 (예, 가구주가 이덕기일 경우 이만기, 이덕수 등) 에 대해서 직업센서스조사표와 사후조사표의 가구원 사항을 대조하여 동일가구원의 여부를 결정함.

다) 나) 에서 대조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의 이름을 센서스 조사표의 가구원 중에서 대조함.

라) 다) 의 대조작업에서도 가구주가 확인 안될 때는 인접조사

구의 센서스 종합표에서 같은 대조작업을 실시함.

마) 라)의 대조작업에서도 가구주가 확인되지 않는 가구원 중에서 사후조사표의 9란 또는 12란에 기재사항이 있는(센서스때의 정확한 주소나 조사받은 장소) 가구원에 대해서만 9란 또는 12란의 주소에 따라 같은 대조작업을 함.

바) 이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대조가 안되는 경우 동 가구원에 대해서는 대조불능으로 처리함.

※ 라)의 대조작업중 9란(센서스 당시의 정확한 주소)과 12란(센서스 당시 조사받은 곳)의 주소가 다를때는 양주소에서 모두 대조하여 두곳에서 동시에 대조되면 중복조사로 처리한다.

2) 다른조사구(전입자)의 대조

사후조사를 받은 조사구와는 다른 조사구에서 센서스를 받은 사람에 대한 대조작업이다.

이 경우에는 센서스당시 다른조사구에 거주했으므로 사후조사표 9란의 주소에 따라 센서스 당시의 조사구를 탐색하여 대상조사구의 범위가 정해지면 10란의 센서스시의 가구주 이름으로 대상조사구의 센서스 종합표에서 모든 가구주를 대조했다.

이경우 대상조사구 탐색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가) 센서스 종합표

나) 센서스 조사구 설정분포도 및 당해 동, 읍, 면 지도

다) 해당 동, 읍, 면 사무소 질의확인

1970년 P.F.S에서는 상기 방법중 주로 "센서스 종합표"에 의해서 대상 조사구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사후조사표의 9란에 기록된 전입전 주소를 분류하면,

(1) 완전한 주소 (번지까지 나타난 주소)

(2) 불완전한 주소

① 가 및 리까지 기록된 주소

② 동 읍 면까지 기록된 주소

③ 구, 시, 군까지 기록된 주소

등과 같다. 이들 주소가운데서 불완전한 주소가 문제이다. 주소와 완전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하는 종합표상의 조사구를 1대상 ED로 하게 되는데 대도시(주로 서울)를 제외하고는 통상 수개의 조사구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불완전한 주소로 대상 ED를 탐색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조사구에서 100개 이상의 조사구로 그 수가 증가 한다.

불완전한 주소 중에서 ①과 같이 가와리 까지만 나타난 주소를 포함하는 조사구의 수는 보통 15를 넘지않는다. 따라서 다소간의 시간소비가 되는건 사실이다. ①의 주소로 종합표상의 대상조사구를 탐색하기가 곤란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사후조사 대조작업에서는 ①과 같은 주소까지 대상 ED추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②, ③과 같은 주소를 가지고 대상 ED를 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③의 경우는 아예 대상 ED탐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②의 경우에도 보통 50개가 넘는 조사구가 대상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대조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전입자의 대조작업에 있어서는 전입전 주소가 적어도 가와리까지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동주소가 포함되는 조사구를 추적하여 대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ED의 범위가 정해지면 동 E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조작업을 실시하였다.

(1) 사후조사표 10란의 가구주 이름으로 대상 ED의 센서스 종합표를 대조함.

(2) (1)의 대조작업에서 가구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동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가 될 수 있는 사람(예,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처, 또는 장남)의 이름으로 가구주를 대치시켜 추가 대조함.
(전가구 비대조의 경우)

(3) (2)의 대조작업에서 가구주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센서스 종합표상의 가구주 이름중 비슷한 사람(예 가구주가 이덕기일 경우 이단기, 이덕수 등)에 대해서 직접 센서스 조사표와 사후조사표의 가구원사항을 대조하여 동일가구원 일지의 여부를 결정함.

(4) (3)의 대조작업으로 가구주가 대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조사표 10란의 가구주(또는 가구원)를 대상 ED의 센서스조사표 가구원중에서 대조함.

(5) (4)에서 대조가 불능이면 대상 ED의 인접조사구의 센서스 종합표에서 같은 대조작업을 함.

(6) 5단계 대조작업에서도 대조가 안되면 12란, 9란과 다른 주소가 기재된 가구원에 대해서만 12란의 주소에 대해서 같은 대조작업을 한다.

(7) 이상의 대조작업으로 대조가 안될 경우에는 동가구원을 「대조불능」자로 처리함.

※ (5)까지의 대조작업으로 대조되는 사람으로 (6)에서도 대조되는 사람은 센서스시 중복조사 된 것으로 본다.

문제점 및 개선점

조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970년 사후 조사는 이원 추정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방법은 일원 추정법과 같이 PES의 질이 센서스 보다 높아야 되고 따라서 PES 조사원의 자질이나 훈련이 더 우수하고 철저해야 함을 필수조건으로 하지않는 만큼 조사원의 자격과 수행해야 할 임무를 그만큼 단순화시킨다는 장점 외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센서스 당시 PES 표본구역안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들의 센서스 당시의 거주지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 자료에 따라 센서스 조사표에서 그들의 조사 여부를 탐색하는 대조작업이 어렵다는데 있다. 이번 1970년 사후조사의 대조작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수한 대조작업 전담요원 확보의 어려움

2. 전입전 주소의 불완전

3. 센서스와 PES 조사 시점의 원격

4. 조사항목의 과다

5. 조사요령서의 복잡

6. 3대도시의 표본 PD 분할의 경계선 설정문제

7. 전입전 가구주의 변동

8. 응답자 선정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조작업 전담요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의 성적상 가장 중요시되는 대조작업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담요원의 확보와 동시에 자질 및 성의가 대조작업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실제로 이번 사후조사에 있어서 이들의 자질은 차지하고라도 절대수의 확보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별도로 이들의 확보계획이 서있지 않은 관계로 타업무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차출해야 하는 관계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자질이나 성의 문제는 거의 도외시할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75년도의 PES 때는 대조전담요원반의 편성을 적어도 실사 이전에 끝내어 실사와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여 실사의 종료와 함께 대조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이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 범위를 넓혀 각과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대조작업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전입전 주소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전입전 주소가 확실해야만

조사구 탐색이 원활하고, 또 대상 조사구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제동 2가로 기재된 경우 실제로 홍제동 2가는 홍제 1, 2, 3동을 다 합쳐 50개 이상의 조사구에 걸쳐 있어서 이 주소로는 대상 조사구를 50개 이하로 줄일 수가 없게 된다. 또 반대로 주소 자체는 완전히 홍제동 산 4번지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홍제동 산 4번지를 포함하는 조사구는 30개 이상이어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대조작업에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구 봉천동 탐골로 기재된 주소이면 관할 동사무소 내지는 현지답사로 탐골이라는 지역의 번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역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게 한다.

이상과 같이 모호한 전입전 주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가급적 통반 또는 호수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후적으로 전입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조사 시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 조사(센서스와 PES) 시점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사후조사의 표본조사구로 이동하는 사람(전입자)의 수가 많아질 것은 명백하다.

반대로 양 조사의 기준 시점을 가깝게 잡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동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원추정법에 의한 사후조사에 있어서는 대조작업의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전입자의 대조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대조자를 증가시켜 결국 센서스 누락율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번지수가 불규칙한 여건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전입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번 조사의 경험으로 봐서 크게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1970년 PFS에서 10월 1일부터 11.20일까지 50일 동안에 발생한 전입자를 보면 PFS 총인구 62,000명 가운데 약 2,800명으로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은 월동을 위한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센서스 시점을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사후조사의 시점을 센서스 시점으로부터 2주일(10월 15일경) 이내로 하지 않고는 전입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1975년 PFS에서는 조사 시점을 10월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모든 준비 계획을 앞당기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조사 항목에 있어서는 1970년의 경우 기본 항목 외에 출생, 사망(항목 외에 별도의 기록표까지 작성함) 및 인구 이동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조사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또한 핵심이 되는 기본 항목에 철저를 기할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1975년 PFS에서는 이들 출생, 사망 인구 이동 항목을 제외한 기본 항목만으로 PFS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CDS가 본체도에 오른 만큼 이들 항목을 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Manual이 복잡하다는 것은 조사 항목의 과다와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조사 항목이 축소되는 것으로 Manual 자체도 간단 용이해질 것이다.

여섯째, 3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표본 추출 문제는 이들 도시의 표본 ED를 여타 지역과 달리 추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다. 앞의 표본 추출 방법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 추출율의 4배로 ED를 추출하고 이들 추출 ED가 각각 4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ED를 4배로 추출하여 전 지역을 고루 Cover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도라고 보나 한개의 ED를 명확한 경계선에 따라 다시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는 데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분할되는 소지역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조사의 중복, 누락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고 더욱이 추출율이 1/500이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문제이다.

경계선 설정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현재 연구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을 적게 Cover 하더라도 한개의 완전한 ED를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전입전 가구주의 이름으로 대조되지 않고 다른 가구주 밑에 가구원으로 있거나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로 되는 경우 또는 동일 가구주가 양 조사에서 서로 비슷한 이름(예, 김계순과 김기순등)으로 나타날 때가 간혹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센서스 조사표에서 직접 확인되는 예로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대조작업을 두번, 세번 다시 반복하는 셈이 되어 이 역시 대조 기간을 오래 걸리게 하고 있으며 조금만 소홀히 하면 비대조자로 처리되기 쉽다. 이 점 대조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덟째, 응답자의 차이에서 오는 조사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로 양 조사에서 서로 대조되는 가구원의 기재 사항을 비교하다 보면 틀림 없는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재 사항이 발견된다.

이 경우는 통상 양 조사의 응답자가 서로 다르거나 가구주(또는 가구주의 처)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이 응답한 경우이다. 따라서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응답자는 반드시 가구주(또는 가구주의 처)로 한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1975년 PPS의 조사표에는 매 가구의 센서스 조사구 번호와 가구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번호를 원할히 수집할 수 있으면 대조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대조작업 요원의 실수로 누락시킬 수 있는 대조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1970년 사후조사의 가장 큰 미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로 남는 것은 센서스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때 당시의 조사구 및 가구 번호를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센서스 준비 조사를 다소 보완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사후조사 대조 요령을 수정 보완해야겠다. 처음 작성된 대조 요령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종합하여 1975년에는 대조요령의 불충실로 인한 비대조자의 증가가 없도록 대조요령을 개선할 것이다.

9. 자료 처리

조사 과정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자료처리 관리가 없이는 결과의 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저하될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볼때 자료처리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자료처리 과정으로서는 1) 자료처리 방법, 2) 자료처리 단계, 3) 자료처리의 품질관리, 4) 우선집계 및 최종집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료를 유용성 있게 통계표로서 발표되어야 하며 또한 신속히 처리하여 자료의 적시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1970년 센서스의 자료처리는 전자계산기인 IBM 360 System을 사용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용 및 분석에 적합한 것이 되게끔 노력하였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품질관리를 소홀히 다루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센서스 자료처리의 과정을 보면 조사원들에 의하여 기입된 조사표가 당원 조사통제국에 오게되면 내용검사 및 부호화 작업을 거쳐 천공 및 검공을 거친다.

이 카드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그대로 들어가 Programing 대로 통계표를 생산하게 된다.

1970년 센서스는 이전의 어느 센서스에 비해 보아도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통계표 설계에 미숙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많은 수정을

거쳐 거의 완전한 것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점이 많았다.

예를들면 Computer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out put된 표의 형태를 바꾸는등 자료 처리 과정에서 무리가 많았던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꼭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 표의 제작단계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제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연구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또는 폐단도 지적될 수 있다. 즉 결과표에 나타난 불합리성을 집계과정에서도 미연방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수정케 함으로써 당초 일장표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받게 하였던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다음 몇가지 사항은 오는 75년도 센서스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가. 표본집계의 활용

1960년에 실시한 국제조사에서는 20% 추출표본 집계를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1966년 및 1970년에는 각각 10%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와 표본집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특히 표본 조사는 표본 추출집계에 비하여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조사상의 문제, 집계과정, 도수의 추정등 작업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개로가 뒤따르고 있어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1%, 5%, 10% 또는 20%의 표본 추출 집계를 시도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내검부호 및 Programmer 요원의 훈련

대부분이 신규로 채용되는 센서스 자료처리 요원(임시직 고용)을 업무별로 보면 내용검사 요원과 부호 요원이다. 이들에게는 간단한 업무내용을 단기간의 훈련과 함께 직접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주의와 훈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검증이나 부호과정에서는 오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수정 내지 부호화 하는 것으로 기계접계 및 결과가 공표되기 이전의 단계까지 기술적인 고찰을 하는 것으로 만일 조사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이 완전하고 내적으로 일치된다고 하면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나, 조사 과정이 복잡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을 가해야 한다. 1970년 센서스는 자료검증에 대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문제는 자료 불일치성과 미상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이며 가능한 Original 을 수정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표의 내용 검증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 1) 원자료의 기입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시키지 않도록 하며
- 2) 기입내용중 명확한 기입오차는 불일치성을 제거 시키고
- 3) 미리 규정된(요령서) 절차에 따라서 동일인 또는 가족사항을 참고로하여 기입이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을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원칙이외에도 분석상의 관점에서 볼때 특히 미보고서

(Not reported) 사항을 범주 분류에서 제거 시킴으로서 사실에 가까운 제표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본다면 검정을 필요로 하는 오차, 누락, 불가능한 기입사항 불합리한 응답으로 구분하여 세밀히 관찰할 수 있다. Programmer의 훈련은 적극적인 On-the-job-training과 신속성 있는 인사관리 등으로 미리 센서스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로그래머에 대한 전문적인 인구학에 관한 지식은 필요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선까지의 인구학의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75년 센서스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은 자료의 투입(In-put) 및 산출(Out-put)에 대한 작업내용을 결정하고 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얻게될 결과를 검정하며, 필요한 결과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료처리 System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결과표의 계획

결과표는 오랜기간에 걸친 많은 노력과 경비등을 투입하여 얻어진 통계조사의 결정체로서 조사결과인 통계수를 명문화하여 알리는 통계표이다.

1970년 센서스의 결과표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6월로서 조사기일 약 4개월 전에야 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분과위원회가 여러차례 소집되었고 또한 실무자간에 심의와 토의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 수정 끝에 그

1970년 인구센서스질의 조희내용

	총 수	이 름	가구주 위의 관계	성 별	생 년 월 일	혼 인 상 태	취 학 여 부	학 령	문 명 의 부
인 구	24,008	98	149	193	332	370	394	396	274

출생 아수	현을 생지	타 도 출생지	5년전 원거주지	5년전 다른 거주지	활 동 상 태	취 업 여 부	산 업	직 업	종사사 외지위	취 업 사 간
1,345	1,820	1,925	1,322	1,390	777	838	5,510	5,350	786	742

1970년 주택센서스질의 조회내용

	총 수	거처의 종류	건물의 종류	건물의 건축시기	주택의 소유관계	주택의종 방수및동 거가구수	주택의 총 평 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
주택	15,845	474	500	7,311	532	944	3,446	565

주택의사용 목적별구분 (일반주택)	건물의외벽에 사용된주건축 재 로	건물의지붕 에사용된재료	주택의 급수시설	주택의 등화시설	주택의 변소시설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324	271	321	315	293	291	258

작업이 완료된 것은 1971년 8월중이었다.

막대한 경비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1970년 센서스 결과표가 계획단계에서 선결요건을 도외시하고 집계가 완료될 무렵에 임박해서야 완성된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결과표안에 의하여 도출됨이 없이 조사항목과 그의 정의를 확장시켜 조사했다는 것은 근거를 상실한 조사이고

둘째, 조사가 실시된 사후에 결과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사의 목적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었다기 보다 기왕에 조사된 항목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었으리라는 점을 용이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계획 내지, 시한성을 지닌 잠정계획은 시종일관 일사불란해야 할 제표과정은 임기 응변식이고, 2중 3중으로 집계를 해야 하는 부담과 자료처리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계획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결과표의 내용

결과에서 얻어진 내용을 간결하게, 질서있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줌으로써 통계자료의 분석, 관찰, 비교, 해설등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결과표의 설계는 단적으로 이용자의 주의를 자료상에 환기시켜 자료가 전하는 지식, 정보 의미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어 이용가를 높이느냐? 하는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70 년의 결과표 내용을 일일이 시비를 가릴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의 중요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이용자의 작업부담을 덜어 주는 각종비율, 평균, 밀도 지수등이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다.

(나) 표본의 몇개표를 제외하고는 전 결과표가 시부, 읍부, 면부로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농촌을 구분하기 위한 좋은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작업량의 과중과 이용가치면에서 어느정도 높은 것인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충북, 전북은 각각 8개읍이며, 제주도는 3개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읍부를 세밀히 분류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인구 5만이상의 읍·면을 세분하여 분류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제표하는 것이 이용면에서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 특히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된 인구이동과 출산력편은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결여로 표 내용을 알기쉽게 설계해야 할 점이 아쉽다.

이상과 같은 3가지점을 지적할 수 있고 한가지 후일을 위하여 유감스러운 것은 실제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논과 이론에 대한 근거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여러해를 두고 참고자료가 될 문제점의 기록이 없음은 심히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1975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직후에 이러한 기록이 빠짐없이 되어야 한다.

3) 결과표의 작성 및 편찬

결과표의 작성에 있어 표본을 포함한 전 16권을 발간했다.

제 1권은 전수 조사보고서로서 11개 시·도와 전국편을 제 2권은 10% 표본결과 보고서로서 경제활동편, 출산력편, 인구가동편과 주택편을 각 특성별로 구분하여 발간되었다.

전수표를 제외한 표본편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상 최초로 각 특성별로 발간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표본의 추정과정, 결과표 내용의 질, 상호 연관표의 내용의 불일치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1970년의 센서스 결과는 많이 지연되었음을 특히 지적해 두고 싶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컴퓨터에서 Print out 된 paper의 활용 문제이다.

내용검사, 부호, 천공, 기재조작 등에서도 오차가 발견되는 수도 있겠지만 각표에 대한 전사 과정에서의 착오는 중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산 과정은 거치기는 하지만 전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시간의 낭비등)오는 센서스에서는 반드시 다음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가) Print sheet 를 기재자체에서 일단 검산하고 사진판으로 그대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며,

(나)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 표에서 나올 수 있는 오차를 사전에 제거(즉 연판표, 미상등)

위와 같은 (가)와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Test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자사의 많은 작업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중요한 모멘트가 될 것이다.

1970년의 결과표에 사용된 통계수치의 활자는 7 Point, 해설문과 표두는 8 point를 사용하였으며 용지는 모조지(전국전용 마색모조) 70 파운드를 사용하여 비교적 짜임새 있는 편찬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영문은 국제적인 교류에 참여하기 위한 타당한 배치였다고는 하나 영역내용에 적당치 않는 번역이 사용되었고 특히 지명의 영문표기는 문교부 제정 「표준 영문표기」에 의해서 통일될 기렸다 하나 다소 검토의 여지가 있다.

4) 결과의 공표

1970년의 인구 및 주택모조서는 조사일(70년 1월 1일)로부터 최종모조서가 나오기까지는 3년 5개월(74년 2월)이란 결코 짧지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통계조사 특히 정태조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시점과 공표시점이 짧을수록 좋다는 것은 말할나위 없거니와 알기서도 언급했듯이 비합리적인 여러가지 장애요인, 다시 말하면 자료계획의 일관성을 상실한 표의 변경, 수정 추가 등으로 인한 공표의 지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만 하였더라도 3년 5개월이라는 긴기간은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의 공표에 관해서 또 한가지 검토해야 할 과제는 공표의 방법이다. 결과보고서만을 간행하는 것으로 구실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재래방법의 비판없는 답습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1천부나 2천부의 보고서 발간만으로서 이용자나 국민으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관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래의 공표방법을 지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의 공표는 1973년 6월 11일 장신규 조사통제국장이 대통령각하에게 Briefing 함으로써 실시조사를 정점으로 하여 고조되었던 관심이 그 결과를 공표할 무렵에 무관심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일으켰다.

즉 당시의 각 매스컴에서는 단순한 보도를 벗어나 분석에 까지 세심한 배려를 한데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70년 인구·주택센서스자료처리 현황

1. 조사표 내용검사 및 부호

1) 소요인원: 230명

2) 처리기간: 1년간

2. 천 검공 업무처리

1) 소요인원: 150명

2) 처리기간: 1년간

3) 기계 : 천공기 60 대
 검공기 40 대
 계 100 대

※ 일부는 2 교대로 처리함.

3. 제조 (기계집계)

1) 기계 : IBM S/360/40 형 (32KB)
 " " (64KB)

2) 기간 : 1 년간 병행처리

5) 품질관리

센서스에서의 품질관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료처리과정에서의 품질관리만을 다루었다.

우선 자료처리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대별해보면 내용검사 부호기입 천공 Program 과 자료의 공포를 위한 편찬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반드시 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들 작업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부를 검사한다 하더라도 오차를 전부 발견하여 완전히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이에 소요되는 인원, 노력, 예산등을 고려한다면 이들 작업결과에 대해서 전수검사 한다는 것 또한 생각밖의 일이다. 때문에 가능한 오차를 줄이는 최대공약수를 찾는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1970 년의 우리나라 센서스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품질관리면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던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센서스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가능한한 초기 계획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꼭 실행 되어져야 한다.

(가) 품질관리의 방법

위에서 말한 품질관리는 대체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다른 하지만 표본에 의해서 집계전에 실시할 수도 있고 집계후에도 실시할 수도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집계전의 품질관리

품질관리를 집계전에 하는 이유는 사전에 오차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각 개인의 작업결과를 체크하는 것이다. 즉 각개인의 처음 작업결과를 100% ~ 80% 검사하고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오차여부를 확인하고 오차를 적게 내는 사람의 작업결과에 대하여서는 50% 또는 40%만 검사하고 점차 숙련도가 더해가는 과정에서는 3~5일에 한번정도씩 검사해 보는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검사를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각 조사구에서 조사표를 제통추출 (Systemoctical sampling) 또는 임의 추출법을 이용하는 수도 있다.

(2) 집계후의 품질관리

일단 집계가 끝난뒤에 조사표등을 검사해 보는 것은 오차의 종류와 그 크기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센서스 자료처리 업무를 개선시키는데 기본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설명된 두가지 방법중 (1)의 방법을 체계화 시켜서 오는 75년 인구센서스에서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에 관한 사항

(무별)시	구	동	구시군	동읍읍면	기타(전화)	조사번호	가구번호	세대구분

1980년 인구조사표 제 2호

조사표

표가용

조사원명

용담정

①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고학여부	유학여부	문명여부	출생이수	출생지	5년간 거주지	출생배	취업여부	산업여부	직업	취업기간
1	①	남	생년월일 나이 생년월일	⑤ 유배를 받은 유배이 미 정확하여 주십시오	⑥ 1. 고학 2. 중학 3. 고등학교 4. 대학 5. 대학 이상	⑦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 4. 대학 이상	⑧ 1. 인다 2. 모른다	⑨ 1. 생년월일 2. 출생배 3. 기타 4. 기타	⑩ 1. 생년월일 2. 생년월일 3. 기타 4. 기타	⑪ 1. 5년간 2. 1965년 1월 1일 3. 기타 4. 기타	⑫ 1. 5년간 2. 1965년 1월 1일 3. 기타 4. 기타	⑬ 1. 취업 2. 산업 3. 기타 4. 기타	⑭ 1. 취업 2. 산업 3. 기타 4. 기타	⑮ 1. 직업 2. 직업 3. 기타 4. 기타	⑯ 1. 취업 2. 산업 3. 기타 4. 기타
2															
3															
4		남													
5															
6															
7															
8															
9															
10															

주택에 관한 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 수		
계	남	여

- 93 -

모든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①~⑭)

<p>① 거처의 종류</p> <p><input type="checkbox"/> 일반주택</p>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p> <p><input type="checkbox"/>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p> <p><input type="checkbox"/>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집</p> <p><input type="checkbox"/>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p> <p><input type="checkbox"/> 기타 ()</p> <p>② 건물의 종류</p> <p><input type="checkbox"/> 독립주택 <input type="checkbox"/> 공공주택 (아파트)</p> <p><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p> <p>③ 건물의 건축시기</p> <p><input type="checkbox"/> 1945년 이전 (25년전) <input type="checkbox"/> 1960년 이전 (10년전)</p> <p><input type="checkbox"/> 1950년 이전 (20년전) <input type="checkbox"/> 1961년 이후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년</p> <p>④ 주택의 소유관계</p> <p><input type="checkbox"/> 자기집 <input type="checkbox"/> 세 없이 빌려온 집</p> <p><input type="checkbox"/> 셋 <input type="checkbox"/> 없음</p> <p>⑤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p> <p>1. 총방수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개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명</p> <p>2. 주가구사용방수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개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명</p> <p>3. 동거가구수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가구</p> <p>4. 동거가구사용방수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개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명</p> <p>⑥ 주택의 총진명수</p> <p>총진명 <input style="width: 10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명</p>	<p>⑦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p> <p><input type="checkbox"/> 재봉틀 <input type="checkbox"/> 전 화</p> <p><input type="checkbox"/> 라디오 <input type="checkbox"/> 냉장고</p> <p><input type="checkbox"/> 텔레비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및 울겜</p> <p><input type="checkbox"/> 전 속</p> <p>⑧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p> <p><input type="checkbox"/> 거주전용주택 <input type="checkbox"/> 영업비용주택</p> <p>⑨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p> <p><input type="checkbox"/> 나무 <input type="checkbox"/> 벽돌 및 돌</p> <p><input type="checkbox"/> 흙 또는 흙벽돌 <input type="checkbox"/> 철근콘크리트</p> <p><input type="checkbox"/> 시멘트부벽 <input type="checkbox"/> 기타</p> <p>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p> <p><input type="checkbox"/> 질, 갈대등 <input type="checkbox"/> 기 와</p> <p><input type="checkbox"/> 합석 (양철) <input type="checkbox"/> 스틸브</p> <p><input type="checkbox"/> 스테이트 <input type="checkbox"/> 기 타</p> <p>⑪ 주택의 급수시설</p> <p><input type="checkbox"/> 수도 <input type="checkbox"/> 우 물</p> <p><input type="checkbox"/> 펌 프 <input type="checkbox"/> 없 음</p> <p>⑫ 주택의 동화시설</p> <p><input type="checkbox"/> 전 기 <input type="checkbox"/> 기 타</p> <p>⑬ 주택의 변소시설</p> <p><input type="checkbox"/> 재래식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없 음</p> <p>⑭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p> <p><input type="checkbox"/> 연 탄 <input type="checkbox"/> 가스 (프로판가스)</p> <p><input type="checkbox"/> 나무, 질, 기타코목류 <input type="checkbox"/> 전 기</p> <p><input type="checkbox"/> 식 유 <input type="checkbox"/> 기 타</p>
-----------------------------------------------------------------------------------------------------------------------------------------------------------------------------------------------------------------------------------------------------------------------------------------------------------------------------------------------------------------------------------------------------------------------------------------------------------------------------------------------------------------------------------------------------------------------------------------------------------------------------------------------------------------------------------------------------------------------------------------------------------------------------------------------------------------------------------------------------------------------------------------------------------------------------------------------------------------------------------------------------------------------------------------------------------------------------------------------------------------------------------------------------------------------------------------------------------------------------------------------------------------------------------------------------------------------------------------------------------------------------------------------------------------------------------------------------------------------------------------------------------------------------------------------------------------------------------------------------------------------------------------------------------------------------------------------------------------------------------------------------------------------------------------	-----------------------------------------------------------------------------------------------------------------------------------------------------------------------------------------------------------------------------------------------------------------------------------------------------------------------------------------------------------------------------------------------------------------------------------------------------------------------------------------------------------------------------------------------------------------------------------------------------------------------------------------------------------------------------------------------------------------------------------------------------------------------------------------------------------------------------------------------------------------------------------------------------------------------------------------------------------------------------------------------------------------------------------------------------------------------------------------------------------------------------------------------------------------------------------------------------------------------------------------------------------------------------------------------------------------------------------------------------------------------------------------------------------------------------------------------------------------------------------------------------------------------------------------------------------------------------------------------------------------------------------------------------------------------------------------------------------------------------------------------------------------------------------------------------------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⑮~⑰)

<p>⑮ 이 가구는 어느 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일반주택</p>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p> <p><input type="checkbox"/>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p> <p><input type="checkbox"/>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집</p> <p><input type="checkbox"/>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p> <p><input type="checkbox"/> 기타</p> <p>⑯ 동거가구의 사용방수</p> <p><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개 <input style="width: 5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명</p>	<p>⑰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p> <p><input type="checkbox"/> 재봉틀 <input type="checkbox"/> 전 화</p> <p><input type="checkbox"/> 라디오 <input type="checkbox"/> 냉장고</p> <p><input type="checkbox"/> 텔레비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및 울겜</p> <p><input type="checkbox"/> 전 속</p> <p>⑱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 연료</p> <p><input type="checkbox"/> 연 탄 <input type="checkbox"/> 가스 (프로판가스)</p> <p><input type="checkbox"/> 나무, 질, 기타코목류 <input type="checkbox"/> 전 기</p> <p><input type="checkbox"/> 식 유 <input type="checkbox"/> 기 타</p>
-------------------------------------------------------------------------------------------------------------------------------------------------------------------------------------------------------------------------------------------------------------------------------------------------------------------------------------------------------------------------------------------------------------------------------------------------------------------------------------------------------------------------	-------------------------------------------------------------------------------------------------------------------------------------------------------------------------------------------------------------------------------------------------------------------------------------------------------------------------------------------------------------------------------------------------------------------------------------------------------------------------------------------------------------------------------------------------------------------------------------------------------------------------------------------------------

①
지정통계제 1호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조사표

조사구명 (기판명) _____ 구분 _____

메 _____

종 _____

매 _____

인	성	적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	직업	학점	종교	거주지	
									읍	면
①	남	남	사실상의 나이 주민등록증의 나이	사실상의 혼인상태	학교에서 다니 십니까? 아니면 취직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어디에 가십니까?	문명여부 있고 없습니까?	자치구	시·군·읍·면·동·구	현주소
이	성	적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여부	직업	학점	종교	자치구	현주소
1	남	남	나이: _____ 세	유사 이 미 혼	취업 퇴 안다했음	중 고 초 대 학	안 다	시	구	동
2	여	여	나이: _____ 세	유사 이 미 혼	취업 퇴 안다했음	중 고 초 대 학	안 다	시	구	동
15	남	남	나이: _____ 세	유사 이 미 혼	취업 퇴 안다했음	중 고 초 대 학	안 다	시	구	동

경계기 획원조사통계구

Dear Foreign citizen

Bureau of statistics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s Conducting
197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the 10th modern census in
Korea as of October 1.

A census of this type as you are very well aware is conducted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to provide the data on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making.

You are kindly asked to answer the census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The statistics law provides that all the answers
to the census questions are kept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disclosed to anyone outside the Bureau but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Your kind cooperation toward the success of the census will be
very much appreciated.

Chos sun Ray
Director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P.S

Not required if you are one of the following:

- 1 Foreign diplomat or
member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 or mission including
accompanying dependents
- 2 Member of United Nations Armed
Forces attached civilian or including
accompanying dependents

Republic of Korea Census for 1970

(Conducted as of Oct. 1, 1970)

ANSWERS TO THE CENSUS QUESTIONNAIRE
KEPT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S LAW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연구에 관한 사항

이름	가구의 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신상사항	1970년 10월 1일 기준				
					보통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970년 11월 20일 생일 가구의 이름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요	이분은 가 구의 관계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실상의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	사실상의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	이분은 7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지금 10월 1일 기준으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노년, 식모, 신 생이유, 파퇴 기, 취우, 유 의, 조, 주, 신, 시	(세)가구주 체, 장남 동거인	남 여	※연좌의 별파는 경의 의 의 의 의	※연좌의 별파는 경의 의 의 의 의	※⑧같은 10월 1일 기준으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⑧같은 10월 1일 기준으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1			노년, 식모, 신, 생이유, 파퇴, 기, 취우, 유의, 조, 주, 신, 시	가구주, 장남, 동거인	남	사실상의 주소지	사실상의 주소지	이분은 70년 10월 1일 기준	지금 10월 1일 기준
2									
3									
4									
5									
6									
7									
8									
9									
10									

조사 여부 ①	조사 장소 ②	이주년도 ③	이전거주지 ④	5년전의 거주지 ⑤
이름은 지난 10월 1일의 조사에 조사되었습니까? ※ 70년 10월 1일 이후의 출생자는 본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일의 조사에 조사되었습니까? ※ 70년 10월 1일 이후의 출생자는 본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사한 년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7부터 2까지에 해당한 가구는 반드시 활을 기입하십시오. ※ 이집에서 출생한 가구는 본항은 기입합니다.	이분이 현재 거주 이전에 사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 이항은 3번 외 1에서 4에 해당 하는 사항만 쓰고 7에서 10번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기입합니다.	1965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집으로 이사하셨다면 5년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이항은 3번 외 1에서 4에 해당 하는 사항만 쓰고 7에서 10번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기입합니다.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 되었음 ③ 다른 조사소에서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 되었음 ③ 다른 조사소에서	① 1970년~월 ② 1969년~월 ③ 1968년~월 ④ 1967년~월 ⑤ 1965년~월 ⑥ 1960~1964년 ⑦ 1952~1959년 ⑧ 1946~1951년 ⑨ 1945년	① 출생지 ② 같은구시군 ③ 외구, □국	① 출생 전 ② 10만과간을 ③ 10만 이하 ④ 외구, □국

☆ 출생여부와 사망여부에서 「있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출생기록표 또는 사망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생 여부		
1. 이 때에 살고있는 부인으로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를 낳으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아 죽사 망한 어린이는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 1, 2항중 「있다」에 해당하면 아래에 기입하시고 2항의 「있다」에 해당되면 아래 출생기입란뿐 아니라 사망기입란에도 기입합니다.		
출생아이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망 여부		
이 때에 살았던 분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안계십니까? ※ 만일 1970년 10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①란에서 ⑤란까지 기입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사망자씨 이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후 조 사 표

※ 통계국 기입한			가구구분	가족구성	
가구원수				핵가족	세대구분
계	남	여			

(특별)	시	구	동	가	번지
	도	시	읍	리	(전화)
		군	면		

조사구번호	지척번호	가구번호	대중 대	가구원수		
				계	남	여

조사원 성명	인
--------	---

응답자 성명	인
--------	---

경 제 기 획 위

주택에 관한 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모든 주택의 층수, 구조, 건축연도, 건축면적, 용도

① 구조의 종류

- ㄱ 독립주택
- ㄴ 연립주택
- ㄷ 공동주택 (아파트)
- ㄹ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상 주택의 층 수, 구조, 용도

- 1. 층 수
- 2. 구조
- 3. 용도
- 4. 용도

② 건축의 시기

- 1. 1945년 이전 (25년전)
- 2. 1950년 이전 (20년전)
- 3. 1960년 이전 (10년전)
- 4. 1961년 이후 → 99년

상 주택의 층수

층수 양

③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친 집
- 3. 친 없이 빌려들짐

상 이 가구의 사용중인 문화시설 및 가재

- 1. 책
- 2. 라디오
- 3. 텔레비
- 4. 전
- 5. 전
- 6. 텔레비
- 7. 기타

모든 주택의 층수, 구조, 건축연도, 건축면적, 용도

① 거처의 종류

- 1. 주택
 - ㄱ 독립주택
 - ㄴ 연립주택
 - ㄷ 공동주택 (아파트)
 - ㄹ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상 이 가구의 사용중수

2. 주택이외의 거처

- ㄱ 숙박업소
- ㄴ 공공건물
- ㄷ 임시 거처
- ㄹ 기타 ()

상 이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책
- 2. 라디오
- 3. 텔레비
- 4. 전
- 5. 전
- 6. 텔레비
- 7. 기타